시험문제 가답안 이의신청서
(제37회 감정평가사 자격 필기시험)

■ 신청자 인적사항			
응시자격종목	응시번호	성명	연락처(핸드폰)
감정평가사			
이의신청 내용(구체적으로 기술할 것 ※ 필요 시 이면 별첨 기술 가능)			

< 이의신청 문제 요약 >

1. 37회 감정평가사 회계학 A형 66번

< 구체적인 이의신청 내용은 별첨 기술하였습니다.>

Ⅰ. 이의신청문제 (회계학 A형 66번)

66. ㈜감평은 20X1년 초 임대목적 투자부동산인 상가건물을 ₩1,000,000에 취득(내용연수 20년, 잔존가치 ₩0, 정액법 상각)하고 원가모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였다. 20X2년 초부터 동 자산에 대해 원가모형 대신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기로 하였으며, 이러한 회계변경은 정당한 회계변경에 해당한다. 동 건물의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으며, ㈜감평의 20X1년 말 이익잉여금은 ₩2,000,000이었다. 투자부동산에 대한 회계처리 반영 전 20X2년 당기순이익이 ₩500,000일 경우, 상기 회계변경 반영 후 ㈜감평의 20X2년 말 이익잉여금은? (단, 상기 건물 이외의 투자부동산은 보유하지 않으며, 이익잉여금 처분은 없다.)

연도	20X1년 말	20X2년 말
공정가치	₩800,000	₩700,000

① ₩1,850,000 ② ₩2,000,000 ③ ₩2,200,000 ④ ₩2,250,000 ⑤ ₩2.500,000

1. 가답안 : 정답 ④

< 가답안의 풀이방법>
1) 20X1년 말 회계정책 변경에 따른 누적효과 = ₩150,000 감소
-> 20X1년도 원가모형에 따른 감가상각비 ₩50,000을 투자부동산 평가손실 ₩200,000으로 변경함에 따라 이익잉여금은 ₩150,000 감소한다.
2) 20X2년 투자부동산 평가손실 = ₩100,000
3) 20X2년 투자부동산 회계처리 반영 후 당기순이익 = ₩500,000 - ₩100,000 = ₩400,000
4) 20X2년 말 이익잉여금 = ₩2,000,000 - ₩150,000 + ₩400,000 = ₩2,250,000

2. 문제제기

정당한 회계변경에 따른 소급효과는 이에 따른 영향을 모두 결정할 수 있다는 전제가 제시되어야 한다. 새로운 회계정책을 소급 적용하는 경우 특정 기간에 미치는 영향이나 누적효과를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별도의 회계처리가 요구되므로 제시된 공정가치의 자료만으로는 소급에 따른 누적효과를 모두 결정할 수 있다는 신뢰성 있는 판단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.

3. 문제제기의 근거

기업회계기준서 제 1008호 문단 24, 25

문단 24 : 비교표시되는 하나 이상의 과거기간의 비교정보에 대해 특정기간에 미치는 회계정책 변경의 영향을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, 실무적으로 소급적용할 수 있는 가장 이른 회계기간의 자산 및 부채의 기초장부금액에 새로운 회계정책을 적용하고, 그에 따라 변동하는 자본 구성요소의 기초금액을 조정한다.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이른 회계기간은 당기일 수도 있다.
문단 25 : 당기 기초시점에 과거기간 전체에 대한 새로운 회계정책 적용의 누적효과를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,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이른날부터 새로운 회계정책을 전진적용하여 비교정보를 재작성한다.

문단 25에 따라 제시된 20X1년 말 공정가치에 대한 정보가 신뢰할 수 없는 경우 소급적용의 한계로 20X2년 말부터 전진적용한다. 이 경우 20X1년 말 이익잉여금에는 수정사항이 없으며 20X2년도 투자부동산 평가손실 ₩100,000을 반영한 후의 20X2년 당기순이익 ₩400,000만 20X1년 말 이익잉여금에 가산되어 20X2년 말 이익잉여금은 ₩2,400,000이 된다.

4. 요구사항 : 선지 내 정답이 없으므로 모두 정답으로 처리되어야 한다.